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6.6.8(수) 17:00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01일

3. 제안 이유

- 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·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등 관련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(안 제8조)
 -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
- 나. 농어촌개발기금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11조)
 - 상위법 제·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
 - 문구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

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기간을 현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·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○ 다만, 조례 개정에 따라 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